# 한의과대학 학사 내규

## -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 -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대구한의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한의과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의과대학 조직과 학사운영,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적과 교육목표) 본 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체와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인격인, 전문지식과 소양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성인, 참된 의료와 보건의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적 실천인을 교육목적으로 한다.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.

- 1. 인간을 존중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을 갖춘다.
- 2. 인류와 사회의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다한다.
- 3. 한의학 기초이론을 탐구하고,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.
- 4.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필요한 임상지식과 진료수행 능력을 기른다.
- 5.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임상현장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다.
- 6. 인류 및 보건의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료전문직업성을 함양하다.

제3조(졸업성과, 시기성과, 과정성과)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졸업성과, 시기성과, 과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.

- 1. 졸업성과는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구성한다.
- 2. 시기성과는 졸업성과와 연계하여 기초이론시기, 임상이론시기, 임상실습시기로 구분하여 성과를 둔다.
- 3. 과정성과는 의학-한의학 입문과정, 한의학 이론 심화과정, 한의학 임상 이론과정, 한의학 임상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둔다.

##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
제4조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본 대학교 학칙 제5조에 따라 한의과대학은 한의예과 2년, 한의학과 4년으로 한다.

## 제 3 장 학년, 학기, 수업일수 및 휴업일

- 제5조(학년과 학기) 본 대학교 학칙 제6조에 따라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①학년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며, 이와는 별도로 방학 중에 계절 학기를 따로 둘 수 있다.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, 전공, 학년별로 2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②정규학기 중 학생 스스로 설계한 도전과제를 수행하는 기린도전학기제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6조(수업일수) 본 대학교 학칙 제7조에 따라 ①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에서 감할 수 있다.
- ②학업전념 목적의 집중적 수업참여가 필요한 경우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휴업일) 본 대학교 학칙 제8조에 따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- 1. 하계방학: 1학기 수업종료후 2학기 개강 전일
- 2. 동계방학: 2학기 수업종료후 다음해 2월 말일까지
- 3. 개교기념일 (9월 16일)
- 4. 일요일 기타 법정공휴일
- ②총장은 필요에 따라 방학기간의 변경이나 임시 휴업일을 정할 수 있으며, 또한 휴업일 이라도 실험·실습이나 기타 수업을 과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

#### 제 1 절 시 기

제8조(입학시기) 본 대학교 학칙 제9조에 따라 입학(편입학, 재입학 포함)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#### 제 2 절 자 격

- 제9조(입학자격) 본 대학교 학칙 제10조에 따라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  - 1.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
  - 2.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.
  - 3. 한의학과는 본 대학교의 한의예과 수료자를 그대로 진학시키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와 동등한 자격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.
- 제10조(편입학) 본 대학교 학칙 제11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해당 학년이나 학기를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,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.

- ②학사 학위를 가진 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원외로 3학년에 학사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11조(재입학) 본 대학교 학칙 제12조에 따라 ①재입학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(총정원)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.
- ②재입학은 제적전 재적하였던 원적학부(과) 및 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모집중지된 경우 유사학부(과) 및 전공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부(과) 및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징계를 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휴학, 퇴학, 제적 및 복학

## 제 1 절 휴학 및 복학

- 제12조(휴학) 본 대학교 학칙 제20조에 따라 ①질병, 군입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- 제13조(휴학기간) 본 대학교 학칙 제21조에 따라 ①휴학기간은 재학 중 통산하여 3년(6학 기)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  - 1. 병역(지원입대 포함)
  - 2. 유급에 따른 휴학
  - 3. 임신, 출산 및 육아 : 최대 2년
  - 4. 창업 : 최대 2년
  - 5. 질병 등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
- 제14조(복학) 본 대학교 학칙 제22조에 따라 ①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하여야 한다.
- ②등록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한 자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
#### 제 2 절 퇴학 및 제적

- 제15조(퇴학) 본 대학교 학칙 제23조에 따라 질병 기타 사유로 퇴학을 원하는 자는 보호 자 연서로써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제16조(제적) 본 대학교 학칙 제24조에 따라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.
  - 1. 휴학 기간 만료 후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.
  - 2.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.
  - 3.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.
  - 4.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.
  - 5. 징계처분으로 퇴학이 결정된 자.
  - 6. 재학 기간 중 통산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. 단, 별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는

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6 장 교육과정, 수업, 시험, 성적 및 졸업

#### 제 1 절 교육과정

- 제17조(교과과정) 본 대학교 학칙 제25조에 따라 ①본 대학교의 교과과정은 교양과정, 전 공과정, 일반선택과정으로 구분한다.
  - ②교과과정의 신설과 폐지, 편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부서별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다.
- 제18조(교과목 이수단위) 본 대학교 학칙 제26조에 따라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학점은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, 실습, 실기, 체육실기, 기타 학칙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
- 제19조(교양과목) 교양과목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이수를 구분하며, 한의예과 과정에서는 교양필수 8학점을 포함하여 영역 구분 없이 총 1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.
- 제20조(전공과목) 한의예과와 한의학과의 전공과목에서는 기초한의학, 임상한의학, 의료인 문학, 양방의학 및 의생명과학, 과학적 의학연구 및 근거중심의학, 임상실습 및 선택실 습 등 다양한 영역의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, 수평 혹은 수직 통합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① 한의예과에서는 전공과목을 6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, 한의학과에서는 전공학점을 16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.
- ② 임상실습은 1,2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및 선택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.

#### 제 2 절 수 업

- 제21조(강의시간표) 본 대학교 학칙 제27조에 따라 ①강의시간표는 매학기 개강 전에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매 학기 원격수업은 학기별 각 교양, 전공(학과)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. 다만, 사회적 재난 및 재해, 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내 원격수업 개설 학점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.
-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 참여한 학과의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학점은 제한하지 않는다.
- 제21조의2(강의시간표 면성) 본 대학교 학칙 제27조의 2에 따라 ① 강의시간은 60분(50분수업 및 10분 준비) 및 90분(75분 수업 및 15분 준비) 단위로 편성한다. 단, 야간 강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수업시간은 다음 시간대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
교시		시간	
교시	구분	50분 수업	75분 수업
1	1A	09:00~09:50	09:00~10:15
	1B	00.00 00.00	
2	2A	10:00~10:50	
	2B	10.00*10.30	10:30~11:45
3	3A	11:00~11:50	
	3B	11.00~11.50	
4	4A	12:00~12:50	
	4B	12.00~12.50	
5	5A	13:00~13:50	
	5B	13.00~13.30	
6	6A	14:00~14:50	
	6B	14.00~14.30	14:00~15:15
7	7A	15:00~15:50	
	7B	13.00~13.30	15:30~16:45
8	8A	16:00~16:50	
	8B	10.00~10.30	
9	9A	17:00~17:50	
	9B	17.00~17.30	

제21조의3(휴강 및 보강) 본 대학교 학칙 제27조의 3에 따라 ①교원은 공무출장, 학회 등부득이한 사유로 휴강하고자 할 경우 휴·결강 및 보강원을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받은 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교원은 학생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공지하고 지정된 일정에 보강하여야 한다.
- ③ 교원은 보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원역량강화시스템을 통하여 교학처로 제출한다.
- ④ 학기 중 공휴일 등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 보강일을 지정하고 이를 학사력에 반영한다.
- 제22조(수강신청) 본 대학교 학칙 제28조에 따라 ①한의예과 학생은 학기당 23학점까지, 한의학과 학생은 학기당 24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.
- ②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해당 학부(과)장의 지도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일단 수강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그 개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수강신청의 변경 허가는 학기초 2주일 이내로 한다.
- ④학생은 매학기 교내 원격수업의 수강신청 학점은 제한이 없으며 별도로 협정을 체결한 국내대학의 원격수업은 6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.
- ⑤교수 자녀 간 강의수강은 허용하지 않는다. 단, 필수 교과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 신청할 경우 강의 담당 교원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 런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## 제 3 절 시 험

- 제23조(시험) 본 대학교 학칙 제30조에 따라 ①시험은 매학기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하되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고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②각 교과목의 당해학기 총수업 시간수의 3분의1 초과 결석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. 다만, 한의학과는 4분의1 초과 결석한 자로 한다.
- ③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전(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)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 및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시험의 성적은 B급 이하로 한다.
- ④성적이 F급일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제 4 절 성 적

제24조(성적평가) 본 대학교 학칙 제31조에 따라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출석, 예습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 등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은 이를 따로 평가할 수 있다.

제25조(성적등급 및 평점) 본 대학교 학칙 제32조에 따라 성적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.

드 급	실취득점수	평 점
A+	95 ~ 100	4.5
A	90 ~ 94	4.0
B+	85 ~ 89	3.5
В	80 ~ 84	3.0
C+	75 ~ 79	2.5
С	70 ~ 74	2.0
D+	65 ~ 69	1.5
D	60 ~ 64	1.0
F	0 ~ 59	0.0

- 제26조(학점인정) 본 대학교 학칙 제33조에 따라 ①각 과목별 성적은 D급 이상을 급제로 하여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.
- ②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.
- ③일단 인정한 학점일지라도 과오 또는 부정으로 인정된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 또는 정 정한다.
- ④편입생 및 조기취업생의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⑤본교에서 제작한 K-MOOC강좌를 K-MOOC플랫폼에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졸업학점의 12학점 이내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따로 정한다.
- ⑥국·내외 다른 학교·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·연구·실습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⑦학생 스스로 설계한 도전과제를 수행한 경우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학 중 최대 18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제27조(타 대학교 이수학점 인정) 본 대학교 학칙 제34조에 따라 ①학생은 재학기간중 필요에 따라 소속 학부(과)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또는 국외의 타대학(교)에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
- ②학점인정에 관한 세부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28조(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학점 인정) 본 대학교 학칙 제35조에 따라 ①105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으로 성적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학부(과)장의 추천과 대학원 장의 허락을 얻어 학기당 취득 기준 학점수의 범위안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.
- ②제1항에 의한 교과목의 취득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29조(학기별 수료학점 및 한의학과 진급) 본 대학교 학칙 제36조에 따라 ①각 학기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

수료인정학년	한의(예)학과 이수학점
1-1	20학점 이상
1-2	40학점 이상
2-1	60학점 이상
2-2	80학점 이상
3-1	100학점 이상
3-2	120학점 이상
4-1	140학점 이상
4-2	160학점 이상

- ②한의예과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한의학과 진급을 인정한다.
- 제30조(유급) 본 대학교 학칙 제37조에 따라 ①성적이 부진한 중도수료 대상자중 자질이 우수하여 학업성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.
- ②유급은 재학중 학기 단위로 한다.
- ③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제 5 절 졸 업

- 제31조(졸업논문) 본 대학교 학칙 제38조에 따라 ①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한의학과는 종합시험, 실험실습보고, 현장실습, 실기발표, 기타 다양한 제도를 선택시행 할 수 있다.
- ②졸업논문은 최종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에 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
-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32조(자격인정) 본 대학교 학칙 제39조에 따라 재학생은 본 대학교가 시행하는 제 인증 제의 인증심사를 받아 소정의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,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

총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33조(졸업 및 학위) 본 대학교 학칙 제40조에 따라 ①한의학과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.
- ②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,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- ③본 대학교 학칙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졸업생으로서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.
- ④4학년말에 소정의 전과정(졸업논문 포함)을 이수하지 못한 자가 다음 1학기 말에 소정의 전과정(졸업논문 포함)을 이수한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 대상자가 후기졸업에 해당할 때도 또한 같다.
- ⑤졸업예정자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계속 수학을 원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.
- ⑥인문학 진흥을 위하여 한의학과 학생은 반드시 졸업 시까지 인문학 교양과목을 최소 8 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제33조의 2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 본 대학교 학칙 제40조의 2에 따라 ①학점 이수 등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할 수 있다.
- ②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본인 원에 의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③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본교 재학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학적을 부여하고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④학사학위취득의 유예는 1개 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.
- ⑤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허가받은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.
- 제33조의3(학위 수여의 취소) 본 대학교 학칙 제40조의 3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- 제34조(다전공자 학위증 표기) 본 대학교 학칙 제41조에 따라 다전공자의 학위증 표기는 하나의 학위증서에 이수전공과 학위명을 모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35조(전공) 본 대학교 학칙 제42조에 따라 한의학과 학생은 소속 모집단위에서 주전공 (제1전공)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학부 입학생의 제1전공은 반드시 소속 학부 내에서 이수 하여야 한다.

#### 제 8 장 포상 및 징계

- 제36조(포상) 본 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.
  - 1.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.

- 2.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.
- 제37조(장계) 본 대학교 학칙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, 유기 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- 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.
  - 2. 본 학칙 제19장의 각 규정을 위배한 자. (개정 '13. 4.23.)
  - 3.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.
- 제38조(학사경고) ①재학중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.5에 미달된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. 단 한의예과 학생은 평균점수 65점에 미달된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.
- ②재학중 징계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에는 학사경고를 병과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개정일)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